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부정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콘텐츠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1
1.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4
1.1. 법률의 취지 및 적용 대상 4
1.1.1. 법률의 제정 목적 4
1.1.2. 적용 대상 6
2. 무엇이 금지되나요? 11
2.1. 부정청탁 행위 11
2.1.1. 부정청탁의 금지 11
2.1.2. 부정청탁의 유형 14
2.1.3. 부정청탁에 대한 예외 21
2.1.4. 위반 시 처벌 23
2.2. 금품 등의 수수 행위 25
2.2.1. 금품 등의 수수금지 25
2.2.2.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30
2.2.3.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 32
2.2.4. 위반 시 처벌 36
3. 어떻게 신고하나요? 39
3.1.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39
3.1.1.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신고 39
3.1.2.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44
3.1.3.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48
3.2. 신고자 보호 및 보상 53
3.2.1. 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 53

1.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1.1. 법률의 취지 및 적용 대상

1.1.1. 법률의 제정 목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의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발표자료』, 9쪽>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78호, 제정이유 참조).

▪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78호, 제정이유 참조).

공직자·공적 업무종사자의 보호

▪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므로,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8쪽 참조).

▪ 공직자 등이 공직자 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을 때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반환한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공직자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8쪽 참조).

국가의 책무 및 공직자의 의무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들은 대부분 공적인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과 관련한 것들로 공적 정책들은 이해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38쪽 참조).

▪ 또한, 공직자 등은 법적인 권위에 근거하여 국가 운영과 관련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38쪽 참조).

▪ 공직자 등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에 비추어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무 및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자세도 중요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38쪽 참조).

청탁금지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

▪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공공기관은 공직자 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공공기관은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의 의무

▪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공직자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기존 법체계 한계 보완

기존 법체계의 한계점 보완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온정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이 부패의 주요 원인이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 「형법」,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금품 수수와 결부된 청탁을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 **청탁금지법의 보완사항**

구 분	기존 법체계 한계점	청탁금지법의 보완사항
「형법」	·직무관련성, 대가성 입증 곤란 시 뇌물죄로 처벌 불가능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의제 시에만 처벌 ·수뢰죄 등 전통적 부패만 규제하고 새로운 부패 규제 곤란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금품 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도 규제
「공직자윤리법」	·법명과 달리 재산신고, 퇴직자 취업제한만 규율 ·적용대상이 원칙상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로 한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를 법제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으로 형벌, 과태료 등 벌칙 조항 신설 불가능 ·임의적 징계로 실효성 확보 곤란 ·헌법기관은 자체규칙으로 위임	·형벌, 과태료 규정 신설 ·필요적 징계로 강화 ·모든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 부패신고 등 절차적인 사항 중심으로 규정	·금지의무 부과 및 제재를 통한 부패방지 실체법으로 기능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9쪽 참조>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2. 적용 대상

법률 적용 대상

※ 법률 적용 대상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발표자료』, 10쪽>

적용 대상 기관 (김영란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적용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적용 대상자

▪ 청탁금지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1조제1항).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나요?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14쪽>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예시**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제1항)

· 공중보건의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

·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중방역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 중인 지역인재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특별검사(특검법) 등

※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8쪽>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예시**

· 기관장 외에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합니다.

·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파견직원

: 파견직원은 파견업체 소속 직원이고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 공직유관단체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시 : 용역업체에 속한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등).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9쪽>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방과 후 과정 교사(강사)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 하는 자(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학교에 배치한 운동부지도자 등도 포함)를 의미하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대학의 시간강사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되므로, 교원으로서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 15쪽>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언론사 임직원의 범위

Q. 외국언론사 국내 지국(지사) 사업자, 언론사 프리랜서, 방송국 외주제작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1) 외국언론사 국내 지국(지사) 사업자 : 외국신문 등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의 해당 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언론사 프리랜서 : 언론사의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데, PD, 방송작가, 스텝, 기상캐스터, 앵커 등과 같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방송국 외주제작사 :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외보 발행 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Q. 병원에서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종별 기타간행물로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발행인: 병원장, 편집인: 대외협력실장). 이 경우, 병원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나요?

A. 일반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기업은 언론사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사보의 발행인, 실무 종사자(담당자, 업무책임자 등), 편집위원 및 실제 사보 발행 업무에 참여한 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주요 질의·회신집』, 15쪽 및 16쪽 참조>

▹ 공직자 등의 배우자(법률혼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에 파견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10·11쪽>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 금지되나요?

2.1. 부정청탁 행위

2.1.1.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금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 이하 같음)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 **법령의 범위**
>
> Q.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 A.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하고,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행정절차법」 등의 각종 절차법도 포함됩니다.
>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42-43쪽>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위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 행위의 주체

▪ 누구든지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부정청탁의 상대방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을 포함하며,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 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도 포함합니다.

·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상급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를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급자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하급자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에게 청탁을 한 경우

Q. A기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직자 B과장에게 콘도 예약을 부탁했고, B과장은 리조트 업체에 근무하는 고교동창 C상무에게 같은 내용의 부탁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A기자가 B과장을 통하여 청탁한 일반 기업체 상무(C)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자 B과장이 콘도 예약업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B과장에 대한 부정청탁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44-45쪽 및 47쪽 참조>

부정청탁의 방법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 **직접 청탁**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됩니다. 다만,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지되는 행위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불일치합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나 불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인 경우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49쪽 참조>

▪ 제3자를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 부모·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효과(이익·불이익)가 제3자인 부모·자녀 등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하며,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를 불문하고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관련판례 (1) 초등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학칙에 근거한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부모가 학교장과 교감에게 정원 외 추가 입학을 부정청탁한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과57471 결정)

관련판례 (2) 공직유관단체인 B 주식회사의 건설사업처 부장으로 근무하던 위반자는 자신의 아들이 B 주식회사의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전형과정에 합격하자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본사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그 중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직원 6명에게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면접 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8. 선고 2018과42 결정)

※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

· 법인과 임직원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법인 소속 임직원(대표권 있는 자를 포함)의 청탁은 법인을 위한 것이며 결국 그 효과도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 대표권 있는 임직원의 대표권에 부정청탁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종업원의 부정청탁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49-53쪽 참조>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 법령을 위반하여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

Q. A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재적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대상자가 될 경우 '잘 부탁한다'고 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청탁의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청탁의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에도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요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위반'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 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저는 장애인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B시 구매담당자에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령에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조항이 있으니 이에 따라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B시 구매담당자는 이러한 구매 요청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구매요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제3항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조항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만으로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62쪽 참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 이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1호).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2. 부정청탁의 유형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발표자료』, 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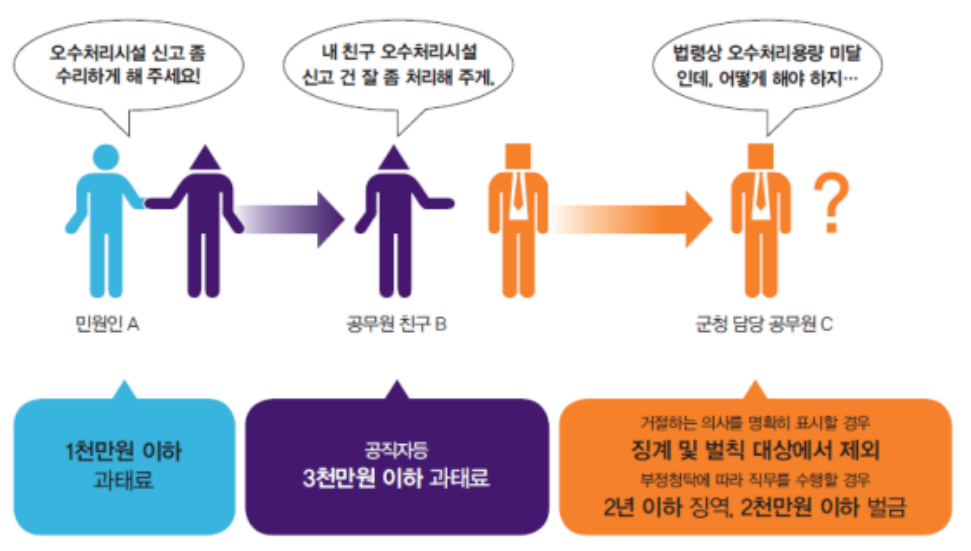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 이하 같음)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 부정청탁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는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5㎥/일'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음. A는 오수처리시설이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용량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이자 같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를 통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C에게 청탁한 경우

→ 하수도법령상 오수처리시설 설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59쪽 참조>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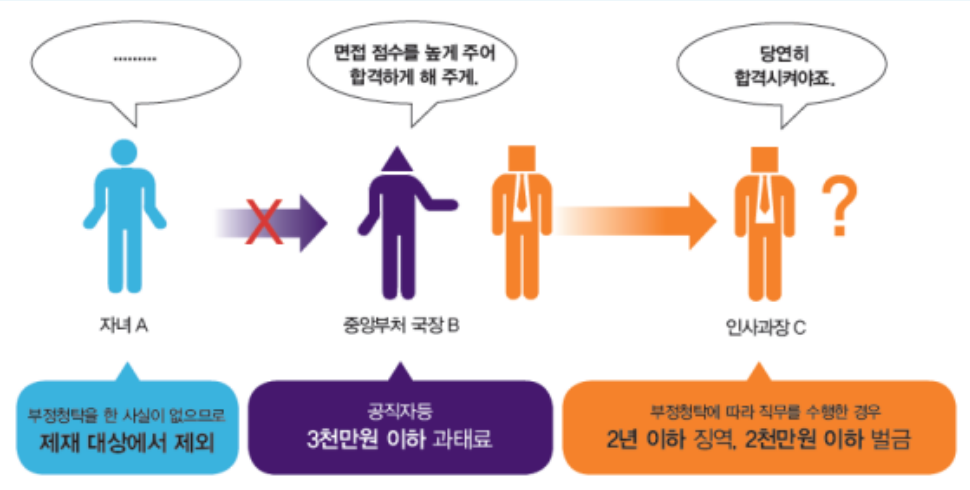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 인사 부정청탁

중앙부처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음. 국장 B는 자녀 A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하여 공직자 등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56-57쪽 참조>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4호)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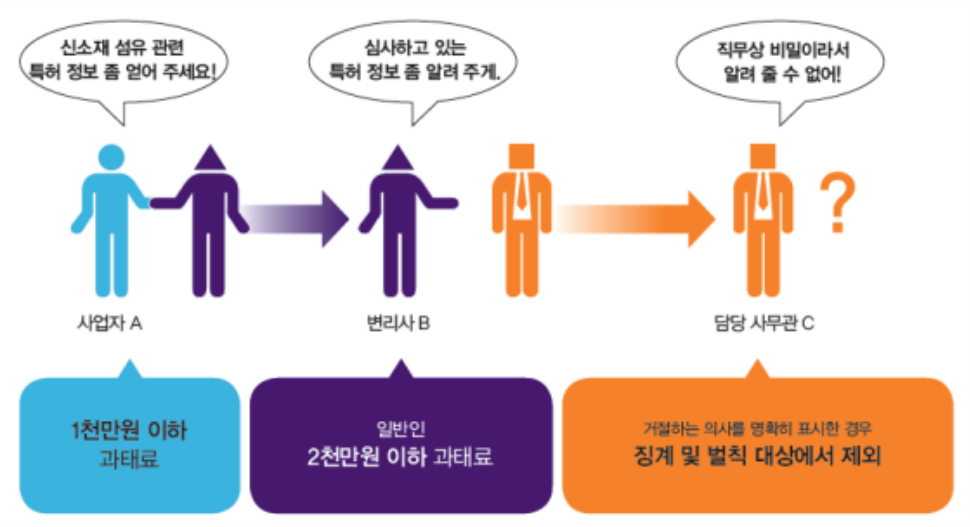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6호)

※ 직무상 비밀 누설 부정청탁

섬유 관련 개인사업을 하는 A는 경쟁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 C의 친구인 변리사 B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여 변리사 B가 사무관 C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사무관 C가 이를 거절한 경우

→「특허법」 등을 위반하여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82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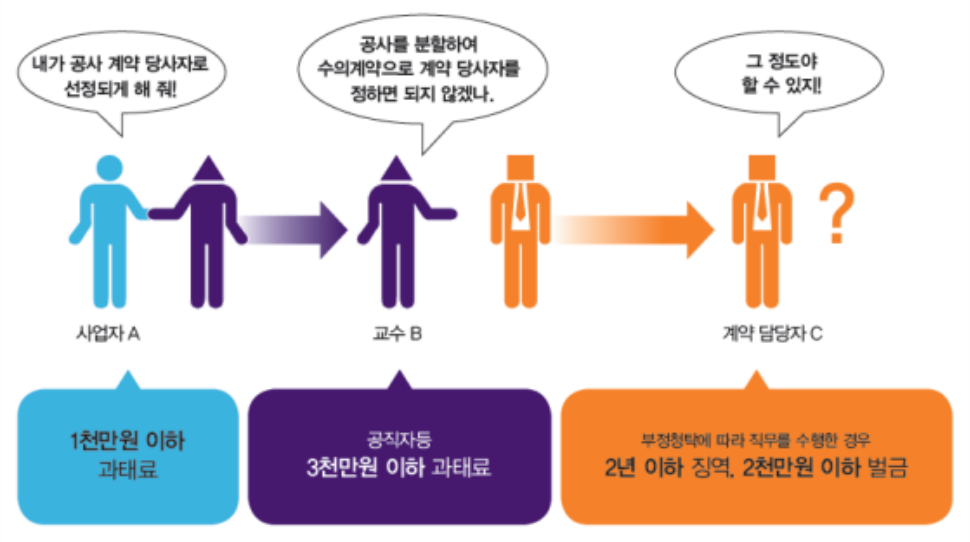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7호)

※ **계약 당사자 선정 부정청탁**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 직원 C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여 건설사업자 A가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경우

→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82-83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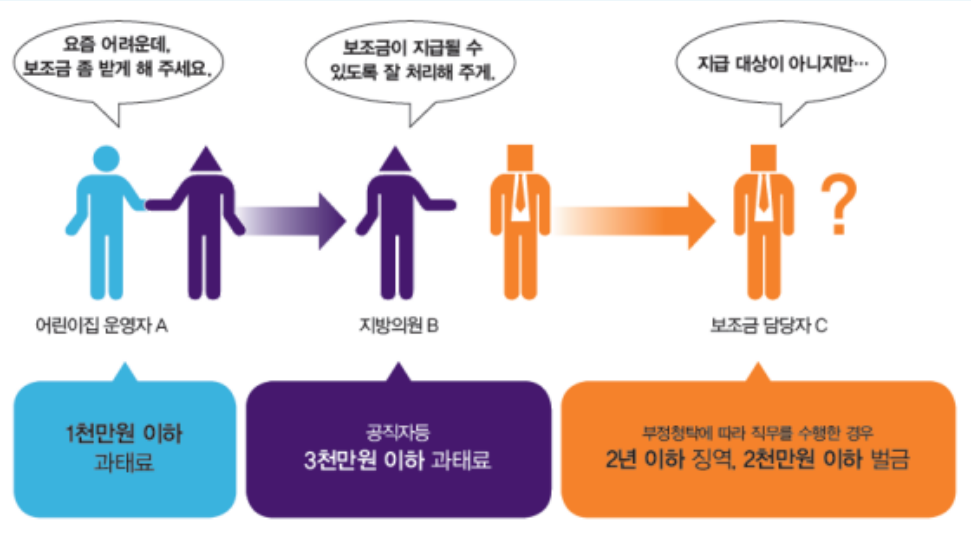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관련 부정청탁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8호)

※ 보조금 부정청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 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92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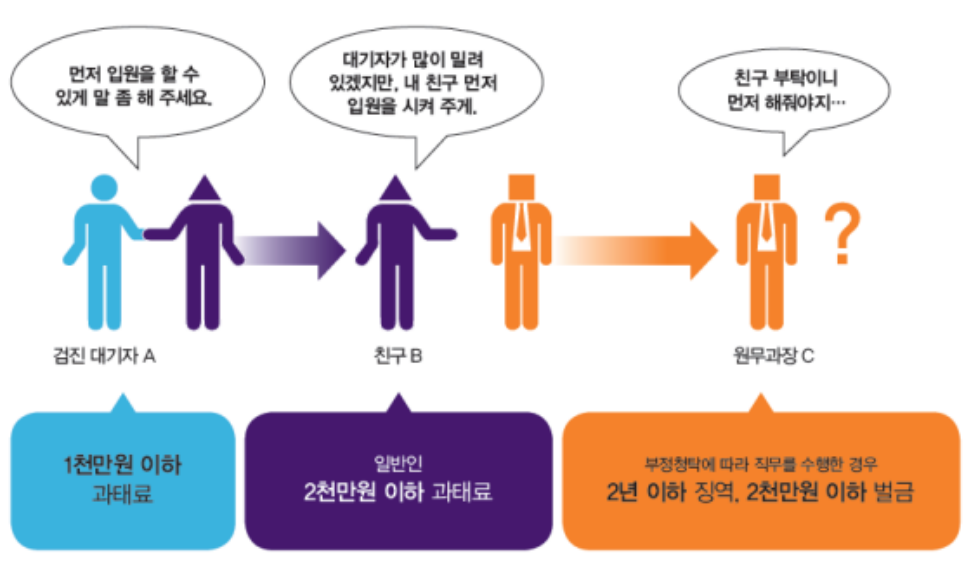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9호)

※ 병원 접수 순서 부정청탁

A는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6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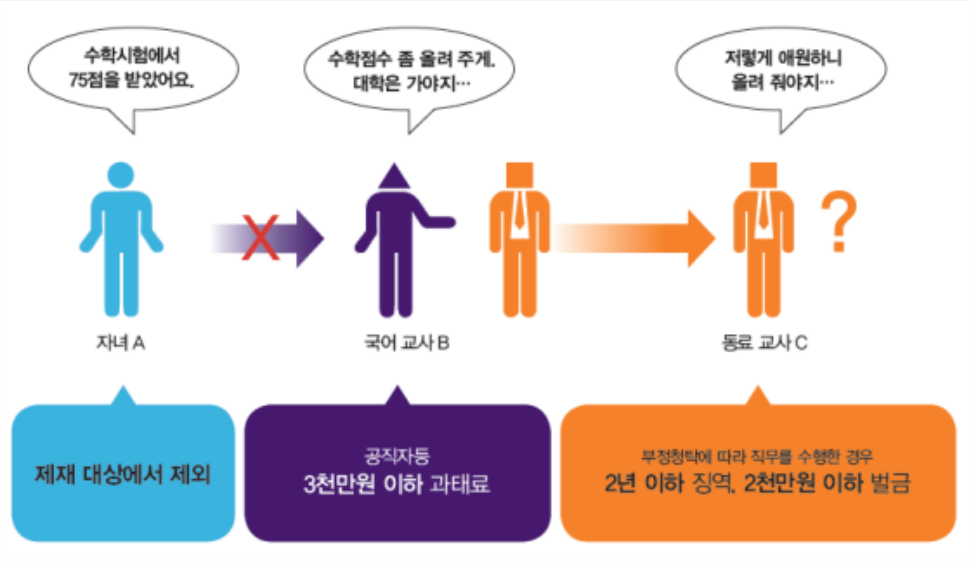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0호)

※ 학교 성적 부정청탁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자녀 A가 모르게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경우

→ 학교 성적을 올려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57-58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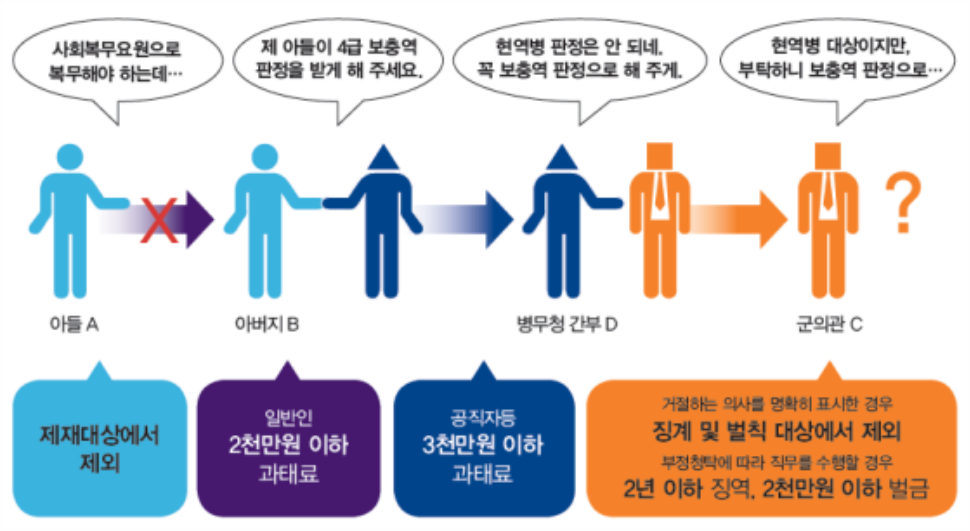
병역판정검사·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1호)

※ 징병 신체등위 판정 부정청탁

아버지 B는 자신의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간부 D를 통하여 병역 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에게 아들 A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가 모르게 청탁한 경우

→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하여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84-85쪽 참조>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2호)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3호)

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4호)

지위·권한을 벗어나는 업무 관련 부정청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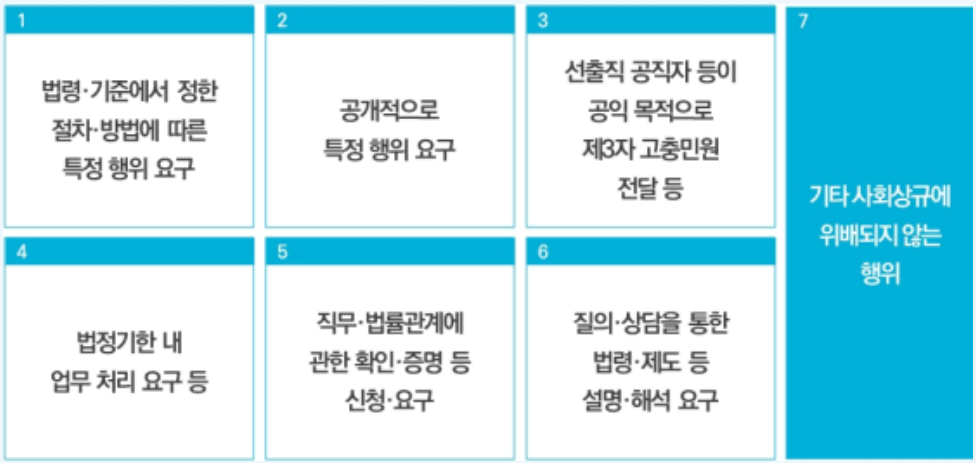
▪ 위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해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5호)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3. 부정청탁에 대한 예외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부정청탁 예외 사유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자료집』, 10쪽>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甲에 대해 입법(법률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

→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甲에 대해 법률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로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93쪽 참조>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민원인 A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통지를 받자, 구청 민원실 앞에서 건축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한 경우

→ '공개적으로'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시위 또는 TV·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한 요구는 공개적인 요구 행위로서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93쪽 참조>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

※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사례

택시에 블랙박스(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과 관련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되지 않음. 이에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부 정책에 따라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 운전자 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를 통하여 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담당국장에게 전달하였음

→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한 행위로서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



※ 공익적인 목적이 부정되는 사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 B가 제3자 A의 고충민원을 전달하였으므로 주체, 대상, 행위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특정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보조금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91-92쪽 참조>

그 밖에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4호)

※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을 하는 행위

민원인 A가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B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B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甲을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

→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문의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94쪽 참조>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5호)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6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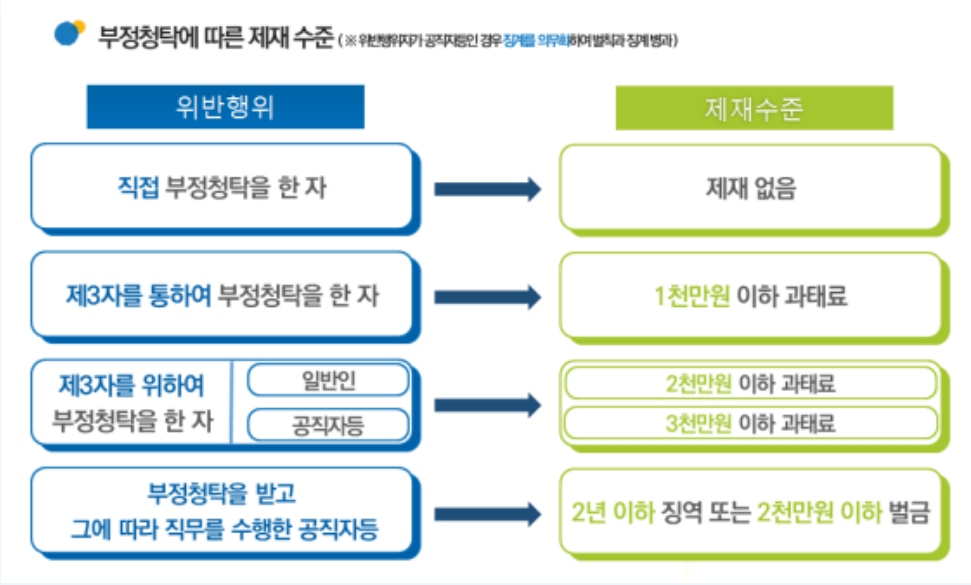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7호)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4. 위반 시 처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부정청탁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발표자료』, 18쪽>

징계

▪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공공기관의 장은 징계를 위해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이행강제금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과태료 부과

▪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

▪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본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제3자를 위하여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본문).

※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3항 단서).

형사처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1호).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Q.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A.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청탁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70쪽>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 금품 등의 수수 행위

2.2.1. 금품 등의 수수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금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1회 100만원 초과 관련 사례

OO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되었음.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 B가 해외 여행을 다녀 오면서 손목시계를 샀다며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경우



: 공무원 A는 감정평가사 B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감정평가사 B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 A와 감정평가사 B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 어려움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14쪽 참조>

※ 1회 관련 사례

OO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하였음



: 과장 A와 사무소장 B는 각각 20만원 상당의 식사와 100만원 상당의 주류, 합계 12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형사처벌 대상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하여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수수한 금품 등에 해당

식사 접대행위와 주류 접대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 가능

대표 C는 과장 A와 사무소장 B에게 각각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22-123쪽 참조>

※ 회계연도 관련 사례

OO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은 경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상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과 이를 제공한 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

공무원 A는 세무사 B로부터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세무사 B는 공무원 A에게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24-125쪽 참조>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1회 100만원 이하 관련 사례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가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대상에서 제외

→ 제약업체 직원, 초등학교 교사,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16-117쪽 참조>

배우자의 금품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함)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은 가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제5항제2호).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사례

지방자치단체장(시장) A의 초등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B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체육관 건립공사 입찰에 참여한 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 A의 배우자 C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인의 밤 행사」에 참여하여 3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경우



1)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지 못한 경우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시장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따라서 시장 A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제재대상이 아님

2)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시장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음. 따라서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시장 A는 형사처벌 대상

3) 시장 A의 배우자 C가 건설업자 B로부터 후원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장 A가 알고 신고를 한 경우

: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B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였음. 따라서 시장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대상에서 제외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45-146쪽 참조>

누구든지 공직자 등, 그 배우자에게 금품 등 제공 금지

▪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2.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함)의 대가로서 다음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

1.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2.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40만원**

   ※ 위의 공직자 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과 그 임직원 : **100만원**

3.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위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Q.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강의 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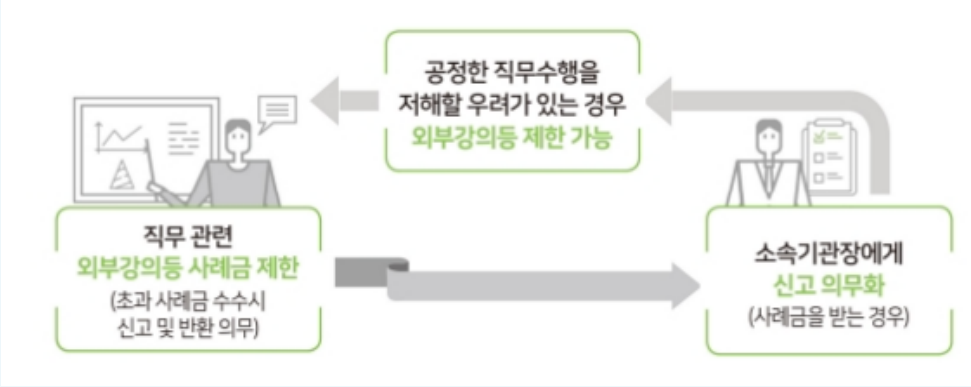
Q. 국내 사립대학 교수가 외국대학,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A. 국내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며,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주요 질의·회신집』, 111쪽 및 137쪽 참조>

외부강의의 신고 및 제한

※ 직무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146쪽 참조>

외부강의의 신고

▪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단서)

외부강의의 제한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 공직자 등은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 외부강의등의 주제
  -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 등에 대해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 통지를 받은 공직자 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 공직자 등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3.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1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참조).

- 음식물: 5만원(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화환·조화는 10만원)
- 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30만원 이하, 그 외 기간에는 15만원 이하)

※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참조).

※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의 일반적 기준

· 구매 영수증 등이 들어 있어 실제 지불된 비용을 알 수 있는 경우 구매가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구입한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자료가 없으면 통상의 거래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액기준을 초과한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경우

· 음식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접대 받은 경우 수수한 음식물 가액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선물: 가액기준(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30만원, 그 외 기간은 15만원) 초과 선물을 수수한 경우 선물 전체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선물 전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 경조사비: 가액기준(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 초과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 가액기준 초과 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111-112쪽 참조>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

※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인센티브

Q.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공공기관 명의로 인터넷 TV 계약 시 사은품(백화점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더라도 그런 상품권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가입 시에도 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가증권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 할 수 있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계약 상대방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76쪽 참조>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4호).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Q.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친족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무원이고 아들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 직원인 경우와 같이 양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품등 제공시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법」 상 뇌물죄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78쪽 참조>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

▪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5호).

※ 별도의 회칙 없이 공동경비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Q. 공공기관 소속 A과장 및 소속부서 직원 7명이 별도의 회칙은 없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모임을 하고 있고, 점심식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자가 매월 10만원(공동경비)을 내고 있습니다. 이 때 공동경비로 과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나, 사안과 같이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78쪽 참조>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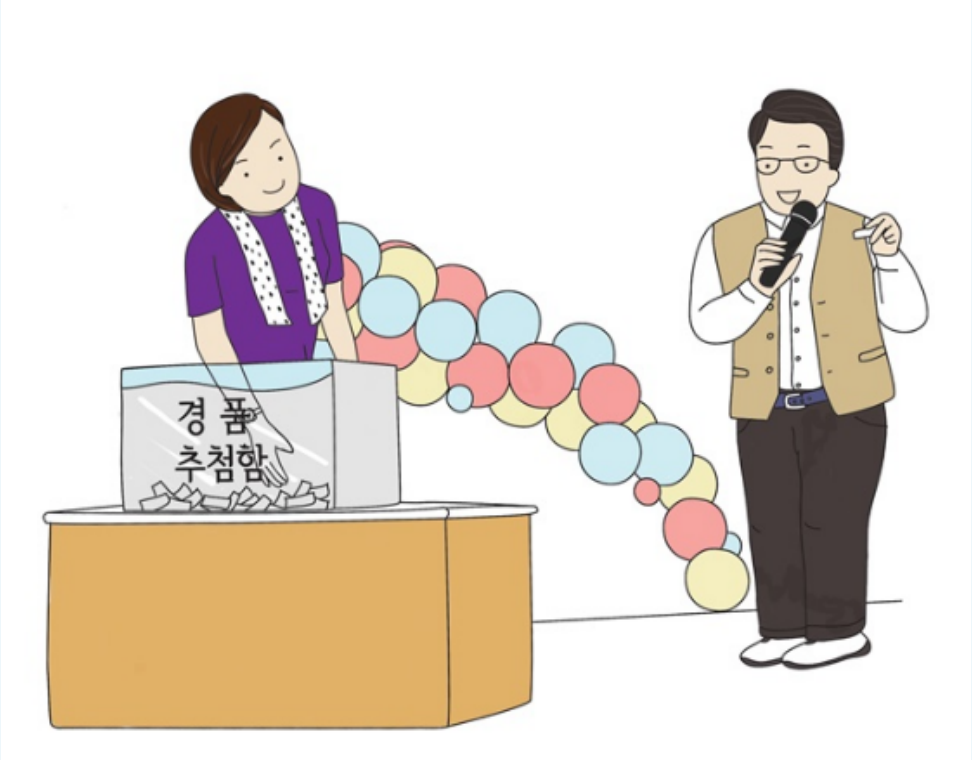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7호).

※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

Q. 공무원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하였는데, A전자회사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공무원은 대기업의 신제품 출시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할 수 있는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것이므로, 경품 추첨으로 수령한 30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82쪽 참조>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 자동차 회사의 마켓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여 할인받는 경우

√ 항공사가 이코노미석의 좌석 수를 초과한 예약(overbooking)을 받았는데, 이코노미석 만석으로 우연히 공직자 등의 좌석이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 관혼상제,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

√ 공연 등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의 지도·인솔 직무를 수행하는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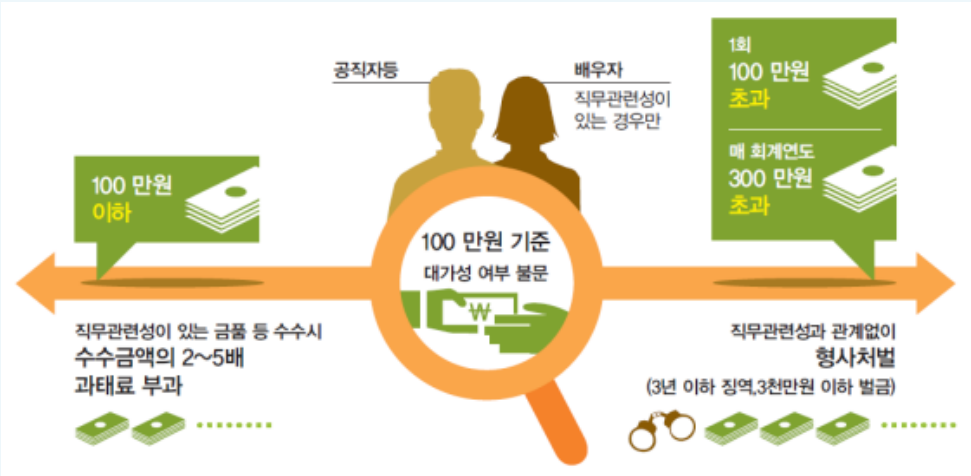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67쪽 참조>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4. 위반 시 처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공직자 등과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74쪽>

징계

▪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공공기관의 장은 징계를 위해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과태료 부과

▪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 그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함에 따라 과태료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제1호 본문·제5항제2호 본문·제5항제3호).

-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
-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 다만,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제1호 단서·제5항제2호 단서).

▹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다만,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단서).

▪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을 받고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공직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

형사처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제1항제2호 본문·제1항제3호).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

▹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 다만,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제1항제2호 단서).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Q. 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 A가 하청업체 직원이 사 온 5만원 이상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회사 임원으로서 동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음료수 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Q. 우리 회사(민간기업)에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혜택, 회사 보유 콘도이용권, 명절선물, 경조사비(30만원), 회사제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받아도 될까요?

민간기업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민간기업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47쪽 참조>

몰수·추징과 징계부과금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 등은 몰수하되, 그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

양벌규정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249-25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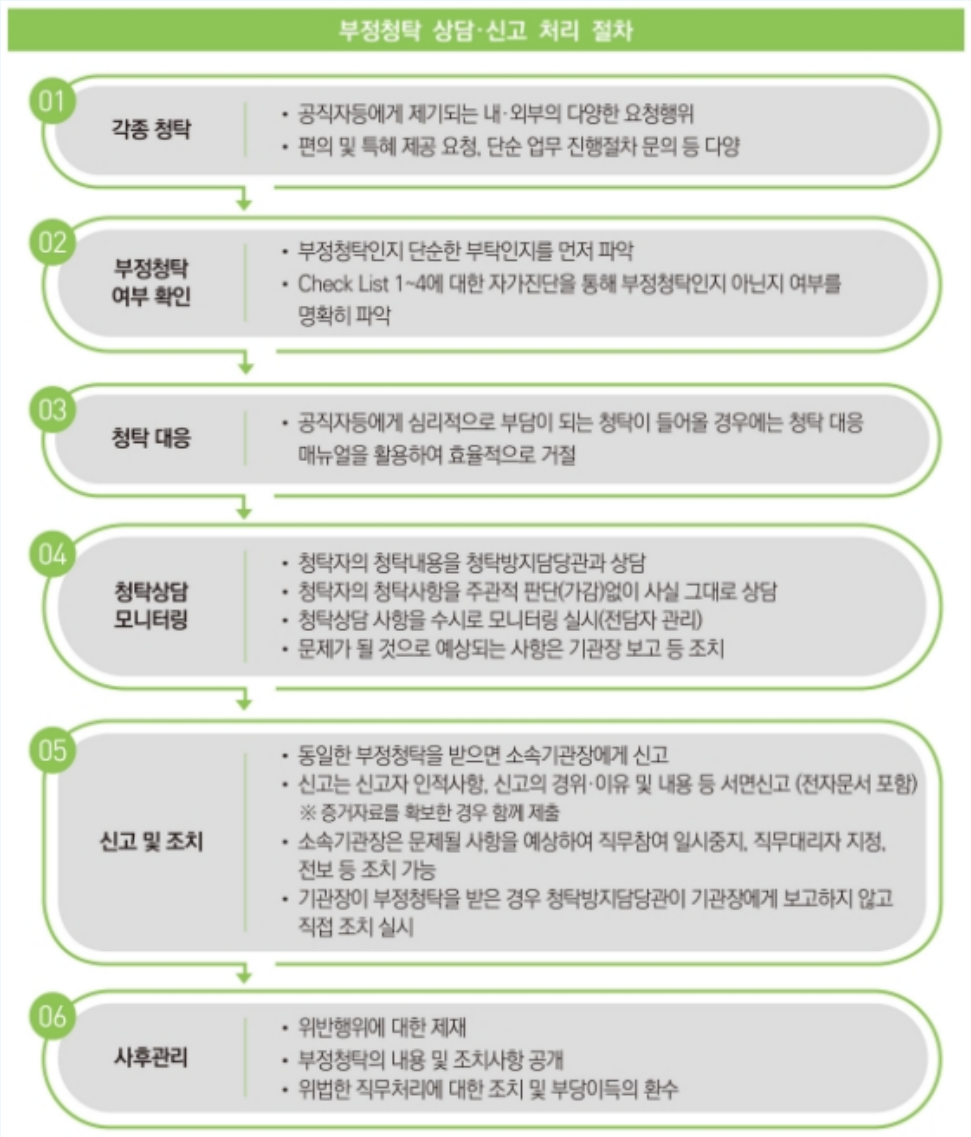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어떻게 신고하나요?

3.1.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3.1.1.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신고

부정청탁의 신고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53쪽 참조>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

▪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

▪ 공직자 등은 위에 따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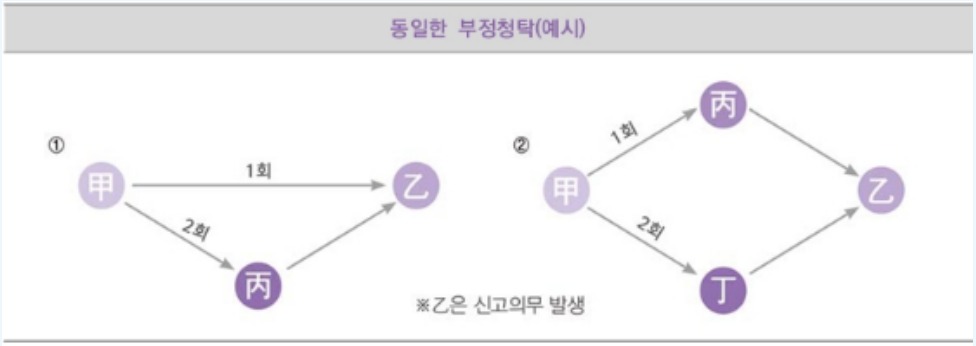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 **동일한 부정청탁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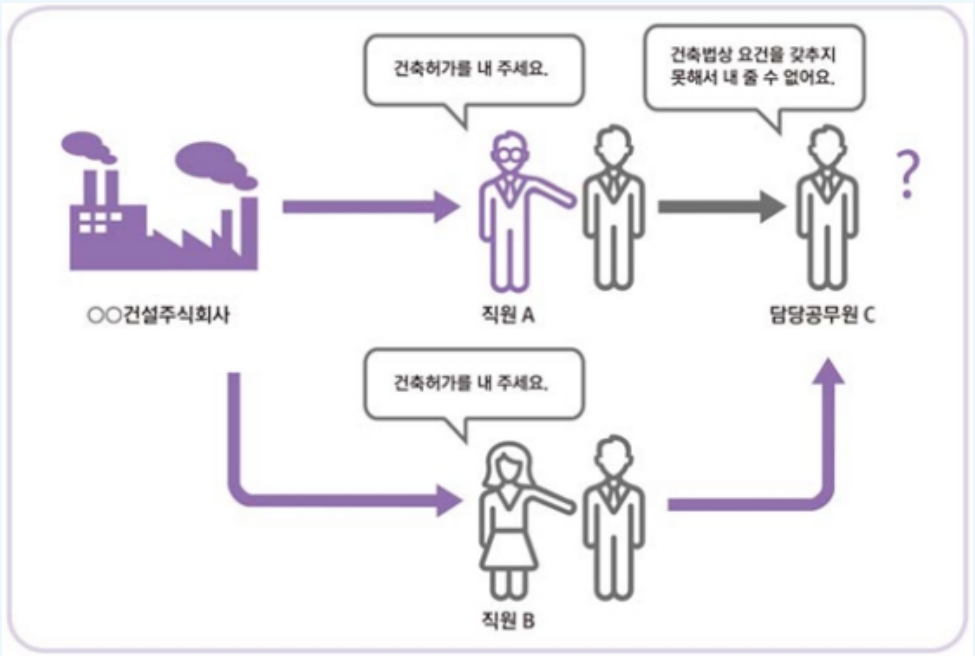
1. ① 이해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직접 1회 한 후 제3자를 통하여 1회한 경우, ② 2회 모두 제3자를 통하여 한 경우

: 모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2. 건설회사(주)의 소속 직원 A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C에게 청탁하자 거절하였고, 그 다음 날 같은 회사 소속 직원 B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담당 공무원 C에게 한 경우

: 여러 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99-101쪽 참조>

▪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소속기관장 등”이라 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 √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신고에 대한 소속기관장 등의 조치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

▪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 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전단).

▪ 소속기관장 등은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의 내용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

소속기관장의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수사기관의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2조제1항).

- 직무 참여 일시중지
- 직무 대리자의 지정
- 전보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사무분장의 변경
-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지 않고 그 공직자 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전단).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이 경우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 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후단).

종결처리

▪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전단).

-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해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후단).

▪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조사 결과의 통보

▪ 소속기관장 등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10조).

-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소속기관장 등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 소속기관장은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속기관장은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 ※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 공개**
>
> Q.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
> A. 과태료 부과 여부, 기소유예 또는 유죄판결 유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 Q.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 A. 공개기간에 대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부정청탁의 공개는 부정청탁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73쪽 참조>

>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2.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반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 공직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공직자 등은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 공직자 등은 위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소속기관장 등”이라 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 금품 등의 반환 여부
-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수수 금지 금품 등의 반환·인도

▪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

▪ 다만, 받은 금품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단서).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금품 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도받은 금품 등의 처리

▪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 금품 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관장 등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 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

▪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해 이첩, 송부 또는 반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

신고 및 반환·인도의 효과

▪ 위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 등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1호).

신고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조치

신고내용의 확인

▪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

▪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전단 및 제21조제3항).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 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전단 및 제21조제3항).

▪ 소속기관장 등은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 내용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소속기관장의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수사기관의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반환 등 요구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으로부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를 받거나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으로부터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금품 등의 신고, 금품 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 등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9조제5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 직무 참여 일시중지
- 직무 대리자의 지정
- 전보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사무분장의 변경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지 않고 그 공직자 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전단 및 제9조제5항).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이 경우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 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후단 및 제9조제5항).

종결처리

▪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23조).

-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해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23조).

-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23조).

조사 결과의 통보

- 소속기관장 등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소속기관장 등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당이득의 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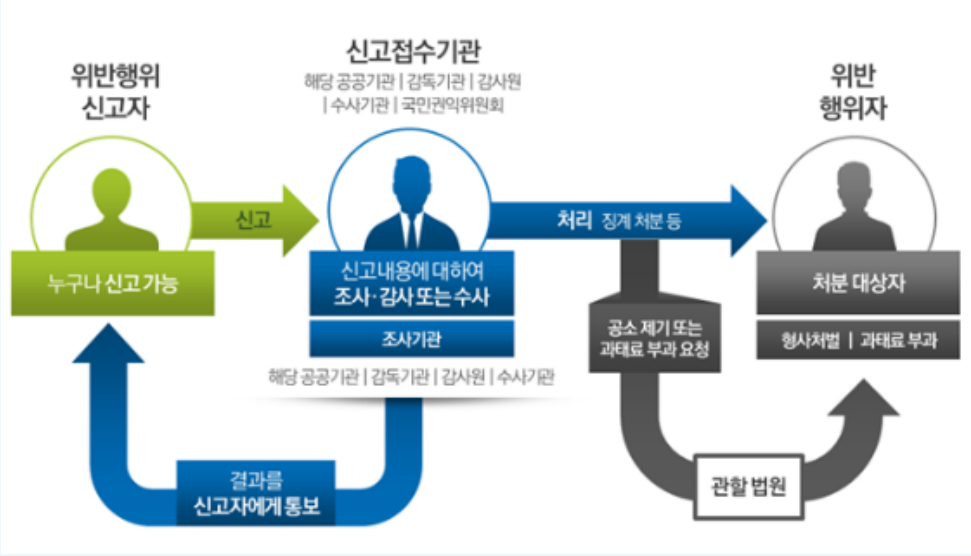
-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 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7조).

>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3.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 ※ **위반행위 신고·처리 과정**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58쪽 참조>

위반행위의 신고

▪ 누구든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 위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신고자의 인적사항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 √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 **※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
>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 또한,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198쪽>

비실명 대리신고

- 위 신고방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해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안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

신고에 대한 조사기관의 처리

신고에 대한 확인

-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2조).
  -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함)에 동의하는지 여부

    ※ 조사기관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해 신고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 조사기관은 신고가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해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해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1.또는 2.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후단).

▪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본문 참조).

-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사항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단서 참조).

-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 봉인하여 보관하는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함)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6항).

조사기관의 신고에 대한 조치

▪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의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제34조제1항).

소속기관장의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수사기관의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및 처리

▪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조사등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항).

-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종결처리

▪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35조).

-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해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후단).

▪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구

이의 신청

▪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사등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 신고자는 위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재조사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등의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전단).

※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후단).

▪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 신고자 보호 및 보상

3.2.1. 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

보호·보상 대상 신고

보호 대상 신고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함)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1. 부정청탁 신고
2.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인도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보상 대상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신고자 보호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 인적사항의 공개·보도 등 금지

▹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 신변보호

▹ 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보호조치

▪ 불이익조치의 금지

▹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 불이익조치 시 제재수준**

금지되는 불이익조치	불이익조치 시 제재수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재 없음

▪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제1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3호).

▪ 책임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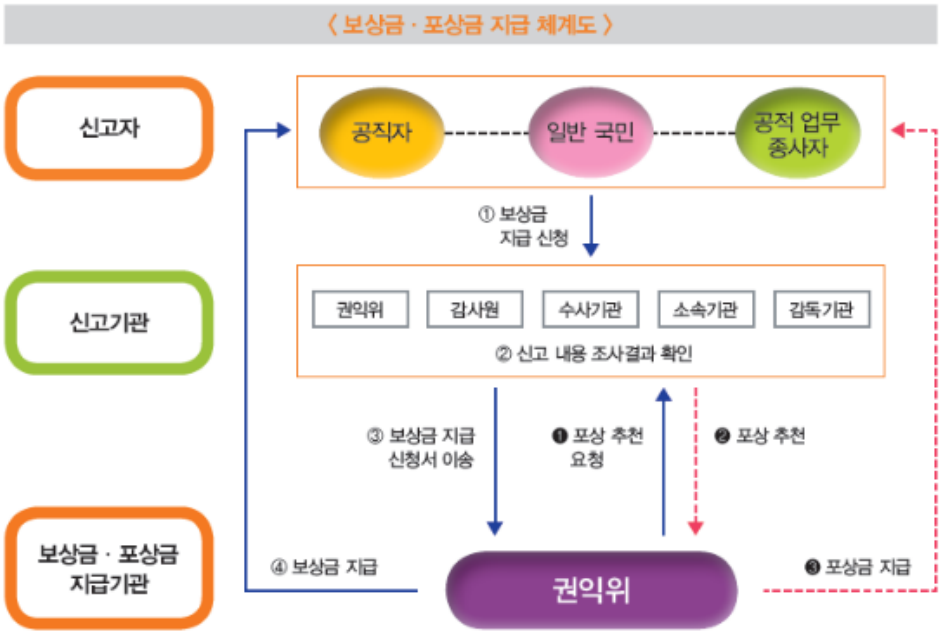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함으로 인해 자신이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신고자 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의 지급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29쪽>

포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사유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함),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에 의해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해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4항).

▪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액은 5억원 이하로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2항).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5항).

보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 보상금 지급사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2항).

√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3항).

▪ 보상금 지급신청 및 결정

▹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6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삼금의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구조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 구조금 지급사유

▹ 신고를 한 자, 그 친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고에 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에 조력한 자가 신고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인가·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함)

▪ 구조금 산정기준

▹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함).

※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신고 및 협조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액

▹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